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87919 저작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권민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황성준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의 공동저작자 및 저작권자임을 확인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위 저작물을 제작, 전송, 방송,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C'라는 필명으로 D 웹툰 사이트에 2018. 3.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라는 웹툰(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152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3. 'F'라는 이름의 D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카페는 비공개 카페로 원고와 피고만이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 개설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이 사건 카페에 이 사건 작품 7화부터 88화까지의 콘티, 수정본 및 완성본 등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4. 23.부터 2019. 11.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작품 내 등장인물의 감정선 및 이에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 연출 방향 등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 방향, 인물 관계도 등 이 사건 작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수하고, 등장인물의 이름, 세세한 배



경 설정, 시놉시스 제안, 콘티와 대사 작성, 작성한 콘티 및 대사 검수 등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작품에 글 작가로서 참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사건 작품이 창작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작품의 단독저작자 및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 및 저작권자임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D 웹툰 사이트에 그림 작가 및 글 작가로 자신의 필명을 표시하여 이 사건 작품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가 D 웹툰으로부터 글 작가에 대한 보수로서 수령한 금원은 본래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금원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임에도 D 웹툰 판매수익, 시리즈 판매 수익, 해외라인 판매 수익, 2차 판권 수익, 광고 수익 등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수익 중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반환금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연재하며 1화부터 88화까지 콘티 작성부터 최종 원고 작성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작품의 등장인물, 줄거리 및 대사 등에 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원고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강제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상적으로 조언하거나 피고가 작성한 글 및 삽화를 일부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피고와 공동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일부 반영하여 이 사건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의견 제시는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의 콘티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이에 관한 검토 및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어떠한 줄거리로 내용을 진행할 것인지, 극중 인물의 구성과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구도, 색채 등으로 표현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정신적 활동은 피고가 하였고, 자신의 구상대로 웹툰의 형태로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도 피고이다.

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에게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이 사건 작품의 전체 줄거리, 등장인물의 구성 및 그 표현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의견이 이 사건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어떻게 기여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의견이 반영된 장면은 이 사건 작품 전체 장면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작품은 총 152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가 이 사건 카페에 콘티 등을 게시하며 원고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이 사건 작품 중 88화까지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경효

 판사 이상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0

별지

목록

웹툰 제목 :

URL :

각 에피소드 제목 :

순번	제목	순번	제목	순번	제목	순번	제목	순번	제목	순번	제목
1	“1”	27	“27”	53	“53”	79	“79”	105	“105”	133	“133”
2	“2”	28	“28”	54	“54”	80	“80”	106	“106”	132	“132”
3	“3”	29	“29”	55	“55”	81	“81”	107	“107”	133	“133”
4	“4”	30	“30”	56	“56”	82	“82”	108	“108”	134	“134”
5	“5”	31	“31”	57	“57”	83	“83”	109	“109”	135	“135”
6	“6”	32	“32”	58	“58”	84	“84”	110	“110”	136	“136”
7	“7”	33	“33”	59	“59”	85	“85”	111	“111”	137	“137”
8	“8”	34	“34”	60	“60”	86	“86”	112	“112”	138	“138”
9	“9”	35	“35”	61	“61”	87	“87”	113	“113”	139	“139”
10	“10”	36	“36”	62	“62”	88	“88”	114	“114”	140	“140”
11	“11”	37	“37”	63	“63”	89	“89”	115	“115”	141	“141”
12	“12”	38	“38”	64	“64”	90	“90”	116	“116”	142	“142”
13	“13”	39	“39”	65	“65”	91	“91”	117	“117”	143	“143”
14	“14”	40	“40”	66	“66”	92	“92”	118	“118”	144	“144”
15	“15”	41	“41”	67	“67”	93	“93”	119	“119”	145	“145”
16	“16”	42	“42”	68	“68”	94	“94”	120	“120”	146	“146”
17	“17”	43	“43”	69	“69”	95	“95”	121	“121”	147	“14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0

18	“18”	44	“44”	70	“70”	96	“96”	122	“122”	148	“148”
19	“19”	45	“45”	71	“71”	97	“97”	123	“123”	149	“149”
20	“20”	46	“46”	72	“72”	98	“98”	124	“124”	150	“150”
21	“21”	47	“47”	73	“73”	99	“99”	125	“125”	151	“151”
22	“22”	48	“48”	74	“74”	100	“100”	126	“126”	152	마지막화
23	“23”	49	“49”	75	“75”	101	“101”	127	“127”		
24	“24”	50	“50”	76	“76”	102	“102”	128	“128”		
25	“25”	51	“51”	77	“77”	103	“103”	129	“129”		
26	“26”	52	“52”	78	“78”	104	“104”	130	“130”		

끝.